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79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3536 배상명령신청 2026초기195 배상명령신청 2026초기196 배상명령신청 2026초기216 배상명령신청 2026초기2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서성호(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¹⁾	변호사 심은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 담당변호사 장세훈(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1)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변호사 김영대, 김시영, 박종훈, 김재원이 추가로 선임되었다.



5. G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H'의 형성 및 투자상품 'I'의 발생 배경

주식회사 J는 2019. 9. 6.경 피고인 B이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회원제 폐쇄형 쇼핑몰인 'K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사 및 지사장을 두었으나, 대구지사 외 다른 지역의 지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20년경 위 K 쇼핑몰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주식회사 J(K 쇼핑몰)의 대구지사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이 카페 운영 및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던 대구 동구 L건물 2층 'M' 카페 및 그 옆 사무실(이하 '대구 사무실'이라 함)에서 주식회사 J(K 쇼핑몰)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강의 또는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위 대구 사무실을 회원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K 쇼핑몰)의 대구지사 회원들이 많이 모집되자 2020년 하반기부터 주식회사 J(K 쇼핑몰)의 회원을 모집함과 동시에 N이라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투자, O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P코인 채굴기라는 가상자산 채굴기 투자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2021년 초경부터 회원들에게 '금융 투자' 또는 '금융 상품'이라고 말하며, 일정기간 돈을 예치하면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추후 원금에 더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약속한 이율이 처음에는 '45일 뒤에 200% 지급'에서, 이후 '100일 뒤에 230%, 145%, 135%, 125% 지급'으로 점차 낮아졌고, 최종적으로 가상자산 탈중앙화 거래소(Q 거래소)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투자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원금이 보장되고 연간 4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I('R' 또는 'S'라고 함)'라는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금융 투자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3. 3. 14.경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함)을 설립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J 대구지사(K 쇼핑몰)와 T는 사실상 그 운영 주체, 운영 방식, 회원 구성이 동일한 집단으로 'H' 또는 'U' 등으로 불리었다.

2. H의 체계와 운영방식 및 피고인들과 기타 담당자들의 역할

피고인들은 H의 위 대구 사무실에서 강의 및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들 가운데 투자금의 규모나, 활동 정도에 따라 '지사장', '매니저', '주주'



의 지위를 부여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각 회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자나 투자금을 유치하면 기존 회원인 추천인에게 그 투자금의 5%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기존 회원인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게끔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자 H의 총수로서 매주 1회 대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I 상품과 코인, 거래소의 전망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투자자가 많아지자 공소외 V에게 투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I 전산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시하였으며, 모집된 투자금의 이체·사용을 지시하는 등 위 H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대구지사장이자 H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일 직접 또는 다른 지사장 등을 시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I 및 금융 상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 설명을 하기도 하는 등 대구 지역의 투자자 모집을 총괄한 사람이다.

공소외 V은 H의 기술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I 상품에 대한 투자금의 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W, X, Y은 피고인 A의 자녀들로서 H 투자금 입금 통장을 관리하고 I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글·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등 투자금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였으며, 공소외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H의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공소외 AH, AI, AJ, AK, AL 등은 각각 H의 회원들로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경 대구 동구 L건물 2층 대구 사무실에



서 피해자 AM에게 'I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40%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매일 발생하여 지급해 주겠다. 이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은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한 '투자금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인 Q 거래소를 만들어서 수익을 낼 것이고, 그 외 쇼핑몰, 전기차 충전소, P코인 채굴,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수익구조가 모두 세팅되어 있어서 리스크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Q 거래소'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연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거나 사업 기반이 없었고, 그 외에도 쇼핑몰, 전기차 충전소, P코인 채굴, 골프장, 리조트 사업 역시 진행되지 않거나 운영상태가 부진하여 이들 사업으로는 투자금의 연 4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기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위 H은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과 수익구조로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후순위 투자자들이 무한히 영입되지 않는 이상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2021. 10. 20.경 I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V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



해자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9,850,000원을 피해자 AM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21. 10. 20.부터 202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5회 합계 2,486,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28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486,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경 대구 동구 L건물 2층 대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2021. 10. 20.경 투자자 AI로부터 2,000,000원을 V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4,315회 합계 28,794,828,398원을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장래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M, AP, AQ, D, AR, AS, AT, AU, G,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247, 371, 37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주식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Z 등 투자설명회 음성 녹취록), - '40프로이야기.m4a' 녹취록(A 설명회), - 'A22.8.27.m4a' 녹취록(A 설명회), - 'A22.9.1.m4a' 녹취록(A, Z 설명회), - '총수공투이야기 23.1.31.m4a' 녹취록(B 설명회), - '총수님특강12월27일.m4a' 녹취록(B 설명회), - '총수플랫폼이야기23.1.17.m4a' 녹취록(B 설명회), 수사보고서(R 투자금 집금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AX(AY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R 투자금 집금계좌에 대한 분석2 - 피의자 B 계좌로 송금된 내역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압수 전자정보 중, 'AZ 대표' 관련 내용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압수 전자정보 캡처 - 사기 고의, 증거인멸 정황, 재범위험성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에서 AZ(AZ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순번 12), J회사 관련 팜플렛 설명자료 등, 각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각 예금거래내역서, 투자 설명 자료, 사업설명회 현장 사진 등 자료, 거래내역서, '(주)H' 회원 명단 출력물, G 계좌 거래내역(출금 등), 계좌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14 내지 18 호), 피고인 B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전자정보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 등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로서 수사기관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일 뿐,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므로(형법 제48조 제3항), 위 각 전자정보는 형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폐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배상신청인 F, C, G,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투자 설명 및 투자 사업을 진실로 믿고 투자를 하였고,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부연설명을 하였는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②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B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년경 B이 운영하는 K 쇼핑몰의 대구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자신이 카페 운영 및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던 곳을 위 쇼핑몰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강의 또는 투자설명회 등을 하는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B의 지시로 'I' 관련 투자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점, ② 피해자 A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돈을 예치하면 원금에 더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였다. 펀드 형식의 사업이 처음에



는 말로만 이루어지다가 2021. 11. 27.경 'I'라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면 연이율 4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인 편당을 하였다. 피고인이 '우리가 은행보다 더 튼튼하고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줄 거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우리한테 넣어라'라고도 했다. 피고인은 J회사 대구지사장이자 U의 대표로서 대구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고 특히 개인 편당 받는 부분도 총괄하고 관련설명회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U'에 투자하면 연 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개월까지는 이자를 지급받고 6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023. 5.말경에는 B과 피고인이 'U'에 투자하면 연 4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BA의 전기자동차충전소사업, K 쇼핑몰, BB센터 P코인, Q 거래소 BC 코인, 골프장, 리조트 등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으로 부터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22. 9. 17. 피해자 AM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는 고객들에게 "연간 40% 이자로 책정돼 있다. 6개월은 그냥 맡겨 놓고 6개월 안에 매일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도 없다. 원금은 6개월 후에 필요하면 빼 쓰시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22. 12. 7. 설명회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I' 상품을 설명하면서 6개월 동안 40%를 받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할 수 있다며 '탈중앙거래소'를 언급하는 등 단순히 B의 설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점, ④ 투자자들은 'I' 관련 투자금 대부분을 V 명의의 AN조합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는바,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되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B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한 점(피



고인은 'I' 관련 투자금 일부가 입금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도 직접 관리하였다), ⑤ V은 수사기관에서, "'I'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연 40%의 이자를 주는데 이걸 하루씩 365일로 나눠서 매일매일 이자가 발생하도록 표시해 주는 전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딸 W은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위 'I'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을 등록하고 투자금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B의 투자설명을 믿고 자신도 투자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찰에서, "'I' 관련 수익금으로 2억 원 넘는 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I'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2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I'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원금 이상을 반환받음으로써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접 투자자들에게 'I'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였고 그 수익금 신규 투자금의 7%를 받아 그 중 5%는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갔고, 나머지 2%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AZ대표(AZ)'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에게 'AZ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지하자금 사기에 회사 자금이 들어갔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I'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의 사업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Q거래스' 운영으로 인한 연 40%의 수익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계속한 점(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



았다. 쇼핑몰 운영과 전기차 충전소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없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보니까 V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편이었다. V의 말을 믿고 연 40%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다. 개발비용으로는 10억 원 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I'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연 40%의 수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원금이 보장되고 연 40%의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확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 쇼핑몰의 대구지사장이자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I' 상품의 투자금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조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하는 등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B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투자된 용도대로 사용한 부분이 많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Q 거래소 개발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에게 '연 40%의 수익이 충분히 난다'고 말하였다. 예치금이 확보되지 않아 거래소 운영이 무산되었다. 유지보수비용이 지급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거래소 개설 비용으로 8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점[V은 수사기관에서, "2022. 5.경 Q 거래소의 프로그래밍은 끝났고 유지보수비용(월 3,300만 원)과 예치금(20 - 50억 원)만 마련되면 구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유지보수비용과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Q 거래소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식회사 AY 측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Q 거래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V의 말만 듣고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운영으로 연 40%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돈에서 거래소 개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돈 이외에 'AZ대표(AZ)'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는 등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거래소 개설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거래소 관련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쇼핑몰 운영과 전기차 충전소 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없었고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한바 없음에도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I'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연 40%의 수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원금이 보장되고 연 40%의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확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통하여 쉽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이 사건 수신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금 중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배우자가 피해자 AO(피해액 900만 원), 피해자 BD(피해액 1,3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_____